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축소 및 친고죄 변경〉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89호)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60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축소 및 친고죄 변경(안 제70조제 1항 등)	3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변경(안 제70조제3항 · 제4항)	14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389호)

가.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29.

다. 회 부 일 : 2024. 8. 30.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4560호)

가. 발 의 자 : 전현희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4.

다. 회 부 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3389호, 최기상의원안)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 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4560호, 전현희의원안)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축소(안 제70조제1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최기상의원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공개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공개로 축소함(안 제70조 제1항).
- (최기상의원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명예훼손 관련 ‘사실’의 정보를 명예훼손 관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정보로 축소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최기상의원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u>사실이나</u> 거짓의 사	2. ----- ----- <u>사생활의 비밀을 침</u>

현행	최기상의원안
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u>사실</u>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생략)	<u>해하는 사실이나</u>----- ----- -----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 ----- -----<u>사생활의 비밀을</u> <u>침해하는 사실</u>----- ----- ----- -----. ②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다. 검토사항

-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허위사실 명예훼손죄)¹⁾.

1)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사자 명예훼손죄**)²⁾,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³⁾.
-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사이버 명예훼손죄**)⁴⁾.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의 반복·재생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임.

<헌행법상 명예훼손죄 체계>

구분		구성요건	법정형
형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제308조)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u>사자</u> 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u> 공연히 <u>허위의 사실</u>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정 보 통 신 망 법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공공연하게 <u>거짓의 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그런데 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심리적 위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건전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⁵⁾.
- 특히 헌법재판소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확인 등에서,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⁶⁾.
 -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공직자가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 진실한 사실은 공동체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축소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사실의 공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5) 조서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018.3.29.

6)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헌행법과 개정안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비교>

구분		현행	최기상의원안
형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사자 명예훼손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정 보 통 신 망 법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u>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u>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u>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현행과 같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관 9인 중 5인의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⁷⁾.

- 이에 따르면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움에도 사실적시의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과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 형법 제310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음.
- 둘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서 개인의 행위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과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7)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마330(병합)

8)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이의 불명확성에 따르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음.

-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죄 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개정 경과에 맞추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모두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으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만을 축소하는 경우 형법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축소, 위법성 조각 등에 대한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현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축소하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388호,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①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②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817호, 조국의원 대표

발의)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요약하자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취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 가능성,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형법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하여 양자 간의 법적 균형, 정합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의 행위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약점이나 허물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인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변경(안 제70조제3항·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최기상의원안)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
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안 제70조 제3항 및 제4항).

○ (전현희의원안)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안 제70조 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최기상의원안	전현희의원안
제70조(벌칙) ①·② (생략) <u><신설></u>	제70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죄는 <u>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u>	제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u>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u>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 ----- ----- ----- -----.	③ ----- ----- <u>고소가 있어야</u> ----- ----- ----- 있다.

다. 검토행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형사소추를 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⁹⁾, 형법과 일부 특별법은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두고 있음¹⁰⁾.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소추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소추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소송 조건이 되는 점에서 본질이 유사하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적극적 기능을 하는 친고죄와 달리 소극적 기능을 하는 반의사불벌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가능성을 다소 넓혀 공익적 관점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음¹¹⁾.
 - 어떠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당 개인의 처분권에 일임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한 한 제한하려는 것이고,

9)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10) 이회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피해자학연구(2013년), p265~p266

11) 윤동호,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피해자학연구 제14권제1호(2006), p133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되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여 친고죄에 비해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따라서 어떠한 범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로서, 입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임¹²⁾.

○ 현행법상 친고죄에는 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¹³⁾와 일부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절도 등 재산죄가 있으며¹⁴⁾,

반의사불벌죄에는 단순·존속폭행죄¹⁵⁾, 과실치상죄¹⁶⁾, 단순·존속협

12)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결정

13)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4)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15)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죄¹⁷⁾ 등이 있음.

-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를 살펴보면, 형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고,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음¹⁸⁾.
- 그런데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의 명예에 관한 죄를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른바 ‘고발사주’ 등 제3자의 고발 남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고, 제3자에 의한 고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최기상의원안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6)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7)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8)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해서만, 전현회의원안은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모두에 대해서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것임.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최기상의원안	전현회의원안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
	사자 명예훼손 (제308조)	친고죄	-	-
	출판물등 명예훼손 (제309조)	반의사불벌죄	-	-
	모욕 (제311조)	친고죄	-	-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되어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¹⁹⁾.

○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평판 악화를 우려하여 고소를 주저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강요할 우려가 있고,

② 명예훼손에 관한 수사 등의 종결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²⁰⁾.

19)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결정

20)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결정

-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죄 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개정 경과에 맞추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만을 친고죄로 변경하는 경우 형법과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개정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현재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²¹⁾.
- 요약하자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명예훼손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형법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하여 양자 간의 법적 균형, 정합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1) 의안번호 제2203388호(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제2204572호(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제2204817호(조국의원 대표발의)

문 의 처
02)6788-5230